

01 기획특집

- 외국기업 한국상장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행규 변호사)

04 법률칼럼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각종 쟁점에 대한 검토 (이광선 변호사)

08 열려라 중국

-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및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명한석 변호사)

12 Vietnam LIVE!

- 베트남정부의 강화된 외환관리에 유의해야 (김주현 변호사)

13 ¡Hola! 중남미

- 브라질에서의 공장 신축 절차 (정철 변호사)

17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러시아)] 해외 IPO(기업공개) 본격화 ...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Global 트렌드(베트남)] 비주력 분야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정정태 변호사)
- [Global 트렌드(브라질)] 브라질 농업, 유전자 변형 기술로 新농업 혁명 추진(정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중국)] 홍콩 버금가는 신흥 항구도시로 부상 기대(김옥림 중국변호사)

20 주목! 이 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전원합의체)(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23 최신법령

- 최고이자율 한도 인하 등
-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25 업무동향

-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한-캄보디아 합작거래소의 지분투자 관련 법률자문 제공

27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아름다운가게 산하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진행하는 '뷰티풀 펠로우' 사업 관련 법률자문사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기획특집)

외국기업 한국상장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행규 변호사

요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들과 관련하여 불거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은 그 이후 봇물을 이뤄 현재 19개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14개)가 상장되어 있고 현재도 상당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고섬 사태가 아직 해결되기도 전에 일본기업 네프로아이티의 청약증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코웰이홀딩스는 자진해서 상장을 철회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한국 자본시장 국제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기업 한국상장은 고사될 수도 있고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선진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기업 한국상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간 제기되어 온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그간 미국기업, 라오스기업, 중국기업, 일본기업, 호주기업 등 다양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업무를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회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회사는 물론 법무법인의 실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기업은 외국의 법 제도나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주관회사 등의 법무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기업의 한국상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과정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행회사의 법률자문사만이 선임되어 실사를 하고 인수를 담당할 주관회사의 법률자문사는 별도로 선임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이나 홍콩 거래소 등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 및 인수인 측을 위해 각각 local 및 international 법률자문사를 선임하고 상호 간에 긴장 관계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제대로 된 업무 관행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기업 한국상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원주를 상장할 것인지 아니면 KDR을 상장할 것인지 여부인데, 최근에 문제가 된 외국기업들이 주로 KDR을 발행한 기업들이어서 외국기업의 경우 원주로 상장할 것인지 아니면 KDR 상장을 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원칙적으로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의 2차 상장은 KDR 발행이 필수적이고, 외국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장래에 2차 상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국거래소에는 당연히 KDR을 상장시켜야 합니다. 설립지국에 DR을 상장시키는 사례는 없고 우리 자본시장법도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원주를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케이만이나 홍콩과 같이 비교적 회사법제와 정관 변경의 자율성이 높은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중국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은 물론 호주, 미국도 KDR 발행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현재 실무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해외에서 성공한 한상기업 또는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상장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외국기업에 투자하여 외국기업의 발전과 성장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성공한 한상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들을 한국에 상장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증가하는 자회사를 중국에 두고 있는 다수의 국내 상장기업들이 중국 자회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장규정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개설될 국제판이나 홍콩, 싱가포르거래소에 우량한 국내 기업의 중국자회사를 모두 빼앗겨서는 안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렵사리 이룬 해외진출의 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과와 과실을 국내투자자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는 물론 국내 증권사들의 국제적인 업무 능력과 수익성도 배가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순수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한상기업과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들 및 어드바이저리 그룹들의 긴 호흡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3~4년간 외국기업의 한국상장을 위해 감독당국을 비롯하여 국내의 거의 모든 증권회사들과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애를 썼고 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상당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급하게 달아오른 만큼 급하게 식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자본시장도 국제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본시장 국제화는 선진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긴 호흡과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다시금 필요한 때입니다. [Jipyong & Jisung](#)

(법률칼럼)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각종 쟁점에 대한 검토



이광선 변호사

1. 개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후 7월 11일 현재 복수노조 설립건수는 221건이고,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약 80%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된 반면 기존 양대 노총에 신규가입한 노동조합은 약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강제제도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국회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요

가. 교섭요구 절차

교섭요구(최초 도래하는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교섭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간) →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 신청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5일간) 및 통지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단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된 후 14일 이내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 가능) → 2단계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 부여(1단계 무산) → 3단계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반수 노조 없을 경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대상) → 4단계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구성(3단계 실패시)

3.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쟁점

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의미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 시행일 당시'의 의미에 대해 ① 2010년 1월 1일자로 보는 견해, ② 2011년 7월 1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의 견해는 부칙 제1조에서 노조법 자체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고용노동부 입장), 뒤의 견해는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2011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부칙 제4조의 교섭대표노조 간주 규정도 2011년 7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의 견해는 부칙 제4조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규정의 시행일이 2011년 7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8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법 시행일 당시'의 의미를 2011년 7월 1일로 보고, 2011년 7월 1일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지만, 법원의 견해가 위와 같다면 2011년 7월 1일 당시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이 많았으므로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개별교섭 동의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개별 교섭 동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은 그에 따라 체결된 단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원하지만 교섭요구에 참여한 복수 노동조합들이 개별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청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개별교섭 동의 기한 이외의 시점에 노조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다.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일교섭단체 조항(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의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상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라. 1사 1노조인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단일노조가 명백할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소수 조합원이 산별노조에 직접 가입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 근로자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경우 어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기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계속 받고, 새로 가입한 노조가 단체협약을 갱신했을 때 비로소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 유니온숍 조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유니온 쉘이 체결된 상황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81조 제2항). 따라서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유니온 쉘 조항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고, 기존 노조가 유니온 쉘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 노조가 결성된 경우 기존노조 조합원의 탈퇴로 3분의 2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유니온쉘의 효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다만, 유니온쉘 조항이 효력이 존재할 때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쉘 조항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입한 후에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그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및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명한석 변호사

1. 서론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인상, 위안화 절상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데 반해,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기업들이 단순한 임가공 수출을 위한 공장 설립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중국 내 현지법인을 두어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관련 절차를 지연시킬 만한 사항들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투자 가능 여부

우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이러한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입니다. 현재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7년에 개정된 것으로, 최근 개정작업을 거쳐 곧 2011년 개정안이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금지, 제한, 장려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는 외국인 투자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바, 아무 제한이나 혜택없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됩니다.

요컨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해당 업종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부터 살펴 봐야 합니다. 가끔은 이러한 조사 없이 비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투자의사결정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 중 하나는 유사한 업종이 세분류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부동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 유형에 해당하나, 그 중에서도 "별장 건설 및 영업"은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제한 유형으로,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서는 금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3. 기업결합신고(경영자집중 신고)

다음으로 투자자가 대기업이거나, 합작 또는 인수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중국법상 경영자집중)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적 영업액의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아울러 그 중 2 이상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나)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아울러 그 중 2 이상의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대상인지,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기업결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쳐 신고를 할 경우 기초심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후속심사를 거치는데,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기초심사 30일, 후속심사 90일 및 60일 연장 가능).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결정은 기업결합 허가 결정, 기업결합 금지 결정 및 조건부 기업결합 허가 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4. 안전심사

기업결합신고가 회사 신설 및 기존 회사 인수에 모두 적용되는데 반해, 안전심사는 기존회사를 인수하는데 적용되는 절차이다. 또한 안전심사절차는 기업결합신고와 중복되어 적용됩니다.

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투자자가 (i) 군수공업, 핵심적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ii)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수산물,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 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의 업종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비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그 국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나)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측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라)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안전심사는 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담당합니다. 안전심사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필요한 법정기간은 최장 100 영업일 정도로 보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1) 우선 설립 및 인수, 합병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에도 어떠한 제한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2)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프로젝트 심사 및 회사설립 또는 인수에 따른 등기/등록 절차 외에 기업결합심사 및 안전심사를 거쳐야 해서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투자자 내부의 사정이나, 또는 합작 상대방 또는 관련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상당히 복잡해 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짐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립한 중국내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인수, 합병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본금의 지분투자를 제한하는 외환관련 규정이나, 안전심사제도로 인하여 그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Vietnam LIVE!)

베트남정부의 강화된 외환관리에 유의해야



김주현 변호사

지난해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은 달러를 비롯한 외환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계속 발표하면서 외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외환의 송금 등에 있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표된 외환 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베트남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지불의 금지

베트남에서는 현행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으로서의 지불이 제한됩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외국인이 베트남내에서 회사로부터 급여,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급여 등의 지급이나 외국 공관에서의 수수료 지급 등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적인 경우의 대부분도 직접적인 외환의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표시 계약의 금지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외환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평가절하 경향을 보이는 베트남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된 외환으로 가격을 정하고, 지급은 베트남동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향에 제동을 가한 것입니다. 외환관련 규정의 보다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부동산거래시 매도인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매수인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 관련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내 회사의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이 베트남내 회사의 외환 특별 계좌(소위 "자본금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외국투자자들까지 지분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지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여 투자자변경을 위한 투자허가서변경절차를 진행하되 양수도대금 지급은 외국투자자의 본국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침에 위와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양수도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투자자변경을 위한 투자허가변경절차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자본금을 완납했다는 거래은행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이익 송금시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자본금 송금시 송금의 전제조건으로 자본금 완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위 지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브라질에서의 공장 신축 절차



정철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지난 호에서는 외국인이 브라질에 진출할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상의 제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토지 취득 이후에 제조업을 위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 필요한 법률상의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일반적인 제한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의 법령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는 5,000개 이상의 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브라질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파울루 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상의 제한

브라질에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시(município, municipality)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시에 대한 도시계획(plano diretor, master plan)을 수립해야 합니다(브라질 헌법 제182조, 법률 [Estatuto da Cidade, City Law] 제10,257호 제41조 제1항). 인구 2만명 미만인 도시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통상 해당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시의 구역 중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질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존재 여부와 도시계획에 따라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도시구역이 주택지대, 공업지대 및 혼합지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공업지대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주택지역이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혼합지대입니다. 공장 건설은 공업지대와 혼합지대에서 가능합니다. 각 지대에 따라 공장 건설을 위한 별도의 규칙이 있으므로 해당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축허가

공장 건설이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시 정부는 해당 시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하게 됩니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발급에 관하여 시 법률(Lei Municipal, Municipality Law) 제11,228/92호와 시 규정(Decreto Municipal, Municipality Decree) 제32,329/92호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Alvará de Aprovação"(Approval Permit, 기본적인 건축허가)과 "Alvará de Execução"(Execution License, 시공개시 허가)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빙, 토지 관련 세금 고지서, 공사에 대한 개요 및 일정 등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Alvará de Alinhamento e Nivelamento"(Alignment and Leveling Permit, 부지 인근의 경계에 관한 확인), "Alvará de Autorização"(Authorization Permit, 임시 건물 건축 등에 관한 허가), "Alvará de Funcionamento de Equipamentos"(Equipment functioning permit, 엘리베이터 등 설비에 관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Certificado de Conclusão"(Conclusion Certificate)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환경허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일반적으로 공장은 오염배출지로 간주되고, 공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허가가 요구됩니다. 상파울루 주에서 환경보호 및 환경허가는 주 법률(Lei Estadual, State Law) 제997/76호와 주 규정(Decreto Estadual, State Decree) 제8,468호에 의해 규율됩니다.

환경허가는 사전허가(Licença Prévia, Previous License), 설치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 Installation License) 및 운영허가(Licença de Operação, Operation License)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사전허가는 프로젝트 장소확정, 설치, 가동에 대한 전반적 허가이고, 설치허가는 시공 단계에 대한 허가이며, 운영허가는 완공 후 운영단계에 대한 허가입니다.

상파울루 주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 상파울루 주 환경청 또는 상파울루 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환경허가 종류, 산업 종류 그리고 관할 환경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브라질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 법률보다는 연방법이 대부분의 법영역에서 주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분야와 더불어 부동산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주와 시에서 제정한 법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역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허가와 관련해서는 주 환경청과 시 환경청의 관할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 법령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실무기관에서의 환경허가 발급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814 | 2011. 7. 13.



[Global 트렌드]

러시아 자본시장

해외 IPO(기업공개) 본격화...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

최근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본점 소재지 국가의 증권거래소를 통해 기업공개(IPO)를 할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거래소를 통해 활발하게 IPO를 실시하는 추세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외국 기업은 각각 5개, 14개다. 현재 외국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전체 상장회사 수의 1%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가 포천(Fortune) 선정 100대 기업을 포함해 우량 외국...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PDF e-Link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Global 트렌드]

국영기업 자회사 M&A

비주력 분야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국영기업의 비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자본금 투자 비율을 계속해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정(Decree 9)에는 국영기업은 총투자금의 70% 이상을 자신의 핵심 사업과 동종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국영기업은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총투자금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정부 투자 기업의 자본 관리와 운영 및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PDF](#) [e-Link](#)



정철 변호사
cjung@jipyong.com

[Global 트렌드]

브라질 농업

유전자 변형 기술로 新농업 혁명 추진

브라질은 1930~1940년대부터 '세계의 창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많았다. 현재에도 여전히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업 수출국이다(설탕·쇠고기·닭고기·커피 등은 1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브라질의 국토 총면적 8억6148만8000헥타르 중 농업 지역이 2억6350만 헥타르로 추정된다. 한국의 농경지 면적 184만 헥타르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브라질이...

[PDF](#) [e-Link](#)



[Global 트렌드]

중국, 저우산군도 경제신구 지정

홍콩 버금가는 신흥 항구도시로 부상 기대

중국 저장성 북동부 항저우만 입구에 있는 저우산군도(舟山群島)는 139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중국 연해 최대의 군도다. 중국 전체 섬의 25.7%를 차지하는 저우산군도의 총면적은 1440km²로 서울의 2.4배에 달한다. 현재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우산군도는 국제 해운 노선의 중추다. 현재 중국을 경유하는 7개 국제 해운 항선(航線) 중 6개 항선이 저우산군도를 경유하고 있다. 저우산 해역에는 15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도(航道)가 13개...

김옥림 중국변호사
yljin@jipyong.com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홈페이지)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1. 판결의 취지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관계

B는 A로부터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20여억 원에 매수한 직후, C에게 27여억 원을 받고 전매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A, C를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A에서 C로 바로 경료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B에게 '최종 매수인들(C)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B는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은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판결의 의의

기존 대법원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위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전원합의체\)](#)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1. 최고이자율 한도 인하 등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925호, 2011. 10. 26. 시행)

1.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층의 금융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가 연 40퍼센트에서 연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참조).
3.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발생의 원인,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조 제2항 참조).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8조 참조).
5.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부칙 제2항 참조).
6. 다운로드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925호, 2011. 10. 26. 시행)

2.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시행)

1.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참조).
2.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제6호 참조).
3.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1항 참조).
4.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제4항 참조).
5.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 등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 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의2, 제15조 제3항 참조).
6.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 제6항 참조).
7.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참조).
8.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문화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이상 연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제3항 참조).
9.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상한을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제23조 제1항).
10. 다운로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시행)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한-캄보디아 합작거래소의 지분투자 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한-캄보디아 합작거래소의 지분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해외 합작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것은 지난해 10월 라오스거래소에 이어 두번째로, 지평지성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라오스 및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설립 각각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와 라오스 정부가 합작으로 2007년 9월부터 설립 준비해 온 라오스 증권거래소(LSX)는 2010년 10월 출범식을 갖고 2011년 1월부터 주식거래를 개시했으며, 한국거래소와 캄보디아 정부가 합작으로 설립 준비해 온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또한 2006년 11월 한국거래소와 캄보디아 재정경제부가 증시 개설 지원 및 합작거래소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 후, 지난 7월 11일 출범식을 가졌으며 증권시장은 오는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 관련기사

- 연합뉴스 - KRX,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성공(2011. 7. 11.)
- 매일경제 - 거래소, 캄보디아에 합작법인 증권거래소 설립(2011. 7. 11.)
- 한국경제 - 거래소,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2011. 7. 11.)
- 아시아경제 - 거래소, 캄보디아 합작 증권거래소 설립·라오스에 이어 두번째(2011. 7. 11.)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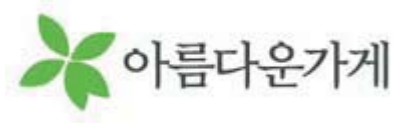
Jipyong & Jisung



In Van Chhoan
캄보디아변호사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아름다운가게 산하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진행하는 '뷰티풀 펠로우' 사업 관련 법률자문사로 위촉



지평지성은 아름다운가게 산하의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진행하는 '뷰티풀 펠로우'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뷰티풀 펠로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선정·육성·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가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관련링크]

- 아름다운 가게 - <http://www.beautifulstore.org/>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 84-4-6266-1901 Fax :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964-022 Fax : 855-23-964-033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